

의안 번호	2423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	--

1. 검토경과

- 제출 일자 : 2025. 5. 29.(목)
- 제출 자 : 문기호 의원 외 9명
- 위원회 회부일자 : 2025. 5. 29.(목)
- 위원회 심사일자 : 2025. 6. 10.(화)

2. 제안이유

- 중구 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안 제1조 ~ 제2조)
- 구청장의 책무(안 제3조)
- 실태조사 및 지원대상, 지원내용(안 제4조 ~ 제6조)
- 교육(안 제7조)

4. 근거법규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 「장애인복지법」 제2조

5. 검토의견

- 생계를 위해 폐지, 고철 등의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은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 본 조례안은 생계를 위해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개인보호 안전장비 및 재활
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
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됨.

근거법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최종처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와 폐열(廢熱)을 포함하되, 방사성물질과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물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 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되지 아니한 적치물 등의 귀속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